

법원의 배상책임 결정사유와 재정결정방향*

- 공사장, 교통소음과 일조권 침해를 중심으로 -

이 승 우**

차 례

- I. 문제제기
- II. 환경분쟁의 현황
- III. 환경분쟁의 배상책임 결정사유
- IV. 환경분쟁의 유형별 배상책임 결정사유
- V. 재정결정방향

[국문초록]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0년 8월 까지 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이 판단한 112건을 분석하면 재정결정 결과와 같은 판결은 80건으로 인용률 71%, 재정결정 결과와 다른 판결은 32건으로 불인용률 29%이다. 이처럼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불복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재정결정과 달리 판결을 하고 있다.

교통소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분쟁소음측정시점을 소음분쟁당시가 아닌 아파트분양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소음도 측정횟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음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생활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도로설치가 위법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 이 논문은 2011년 12월 3일 한국환경법학회 제107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임.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없는 한 도로설치 자체를 두고 도로관리를 잘못하여 환경오염 원인을 야기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한편 공사장소음의 판단시 공사현장에서의 건설기계 작업회수, 1회 작업시간, 지속시간, 작업간격 등을 수인한도 판단시 참작하고 있다. 그리고 일조권침해 판단시 법원은 일조방해와 관련하여 가해건물의 공공성이 클수록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정도를 넓게 인정하면서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조권을 침해한 자가 건축관련 법규 등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비록 일조권 침해자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축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조침해를 예견하였다면 그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건물신축 당시 건축관련 법령에 상업지역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의 제한규정이 없고 건축 관련 법령상의 각종 기준에 위반하지 않았다 고 하더라도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I. 문제제기

환경분쟁 소송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장과 교통소음 그리고 일조권침해에 관련된 사건은 원인의 불명확성과 다양성, 인과관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과실책임주의의 완화 또는 무과실책임의 인정¹⁾, 위법성 판단을 위한 수인한도의 초과 여부 판단 문제, 피해액 산정의 곤란 등으로 인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한 판단의 여지가 많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991년 7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총 2,867건을 접수하여 2,416건을 재정(裁定), 조정(調停), 중재합의로 처리하였다.²⁾ 처리된 사건 중에서 소음·진동에 관련된 사건이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2,070건이고 그 중에서 재정결정은 1,403건이다.³⁾ 이렇게 효력이 확정된 2,416건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2,032건은 합의, 16%에 해당하는 384건은 조정 중단 또는 소송제기 등

1)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판결 등 참조. 환경분쟁 사건의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긍정하고 있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1년도 환경분쟁조정-제도개선 및 우수사례발표 자료」, 2011. 11. 23., 17면.

3) 양근철, "환경분쟁조정현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1. 3. 31., 1면.

미합의 사건이다. 최근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재정결정된 870건 중 173건이 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소송물이 전체 약 2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법원이 판단한 112건을 분석하면 재정결정과 같은 판결은 80건으로 인용률 71%, 불인용한 판결은 32건으로 불인용률 29%이다. 이처럼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불복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재정결정과 달리 판결을 하고 있다.

공사장과 교통소음 그리고 일조권침해에 관련된 사건 중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과 법원 판결의 배상책임 결정사유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재정결정의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II. 환경분쟁의 현황

1. 제소현황과 결과

<표1>에 의하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04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재정결정한 870건 중 173건이 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이 약 20%를 차지하며,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 취하를 한 61건 이외에 법원 판단이 이뤄진 112건 중 인용이 80건으로 인용률 71%, 불인용이 32건으로 불인용률 29%이다.⁴⁾

<표1> 재정(裁定) 사건의 소송 현황

구분	재정	소송	소송결과<단위 : 건수 (%)>				진행중
			소계	인용	불인용	기타 (소취하 등)	
합계(%)	870	173(20)	124	80(71)	32(29)	12	49
2010년	81	8	-	-	-	-	8

4) 신태섭, “분쟁조정사건 소송결과분석(2010년 상반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0. 8. 16., 9면.

2009년	230	35	6	3	2	1	29
2008년	149	32	25	16	8	1	7
2007년	126	26	23	18	4	1	3
2006년	83	13	13	7	2	4	-
2005년	100	29	27	18	6	3	2
2004년	101	30	30	18	10	2	-

2. 법원 판결의 분석

<표2>에 의하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서 미합의된 180건 중 법원의 위원회 결정과 같은 사건수가 75건으로 인용률 41%, 위원회 결정과 다른 사건수가 32건으로 불인용률 18%로써 법원의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인용률이 불인용율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미합의된 사건 중 그 밖의 유형으로는 법원의 소송진행 46건으로 26%, 소취하 등이 27건으로 15%를 차지하고 있다.

<표2> 연도별 소송결과

구분	미합의	소송결과<단위 : 건수 (%)>				
		계	인용	불인용	진행중	기타
합계	180	180 (100)	75 (41)	32 (18)	46 (26)	27 (15)
2009년	38	38	2	-	36	-
2008년	32	32	15	9	7	1
2007년	26	26	19	5	1	1
2006년	18	18	7	2	-	9
2005년	34	34	18	6	2	8
2004년	32	32	14	10	-	8

<표3>에 의하면 미합의된 180건 중 공사장소음이 79건으로 44%, 교통소음이 39건으로 21%, 일조가 34건으로 19%를 차지하여 총 분쟁유형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유형으로는 층간소음 11건(6%), 약취 3건(2%), 수질오염 3건(2%), 기타(대기오염 등) 유형 11건(6%)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분쟁유형별 소송결과 인용률을 보면 공사장소음 48%, 일조방해 76%로 높은 편이나 교통소음은 13%, 층간소음 18%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표3> 분쟁유형별 소송결과

구분	미합의	소송결과<단위:건수 (%)>				
		계	인용	불인용	진행중	기타
합계	180	180	75	32	46	27
공사장	79	79 (100)	38 (48)	7 (9)	20 (25)	14 (18)
교통	39	39 (100)	5 (13)	18 (46)	11 (28)	5 (13)
일조	34	34 (100)	26 (76)	1 (3)	6 (18)	1 (3)
층간	11	11 (100)	2 (18)	4 (36)	5 (46)	-
약취	3	3 (100)	2 (67)	-	1 (33)	-
수질	3	3 (100)	1 (33)	2 (67)	-	-
기타	11	11 (100)	4 (36)	-	3 (28)	4 (36)

III. 환경분쟁의 배상책임 결정사유

법원의 소송결과 인용률을 보면 분쟁유형별로 공사장소음 48%, 일조방해 76%로 높은 편이나 교통소음은 13%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과와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의 주요 배상책임 결정사유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소송수행상 문제

(1) 무변론 판결과 소송수행상 자백간주와 공시송달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소송한 사건 중 법원에 의해 불인용된 판결 중 주로 무변론 판결과 소송수행상의 자백간주와 공시송달 등으로 패소된 사례가 많다. 무변론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없이 하는 판결 형식이다.

교통소음 사건 중에서 용인시 현대홈타운아파트 입주자들이 인근 경부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대책을 청구한 사건에서 중앙환경조정위원회는 **중앙환조 03-3-164, 165** 재결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인 한국토지공사 등이 불복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면서 일부 신청인인 아파트입주자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무변론으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7470 판결**에 의해 패소하였다.⁵⁾ 한편 소송수행상 자백간주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소송수행상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장소의 불명으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공시송달을 하게 된다.

(2) 입증불충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거나 법원의 소송에 의하는 경우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증거의 수집·제출 책임을 다하여야 하므로 법원의 불인용 판결 중 입증이 불충분하여 패소된 사례가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2007가합1268 판결**에 의하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특정채무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5) 수원지방법원 2005. 12. 6. 선고 2004가합7470 판결.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원고가 주식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택지를 매도할 당시 경부고속도로로부터 유입되는 소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었었고 원고가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키는 대책을 제대로 강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과실에 기하여 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 관하여 위 피고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피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⁶⁾

환경분쟁의 당사자들에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절차와 소송을 통한 법원 판결절차의 차이점을 인식시키고, 재정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유사사건에 대한 안내 등 각종 재정결정 전후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수인한도

인간의 공동생활로부터 발생하는 일정정도의 환경침해는 그 정도에 따라 수인해야 하며 그 범위를 초과할 때 비로소 위법하다.⁷⁾ 따라서 도로, 공사장의 소음도와 향수하는 일조량이 기준 내라면 수인해야 한다.⁸⁾ 이러한 수인한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익, 즉 피해자가 받는 생활이익의 침해와 가해자의 권리행사의 사회적 타당성을 비교형량하여 상린자 상호간에 어느 정도 수인을 필요로 하며 그 한계를 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인정하게 된다. 환경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⁹⁾

6)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0. 2. 12. 선고 2007가합1268 판결.

7) 박창현, "일조권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관례연구」 제7집, 부산관례연구회, 1997, 605면.

8) 加藤一郎編, 「公害法の生成と展開」, 岩波書店, 1968. 8, 27頁; 野村好弘, 加藤一郎編, 「公害法の生成と展開」, "故意·過失および違法性", 岩波書店, 1968. 8, 387頁; 淡路剛久, 「公害賠償の理論」, 有斐閣, 1978, 111頁; 澤井裕, 「公害の私法的研究」, 一粒社, 1969, 405頁 以下; 奥田昌道 外編, 「民法學(6)」, 有斐閣, 1975, 81頁 以下.

9)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92;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대법원 2002.

IV. 환경분쟁의 유형별 배상책임 결정사유

1. 교통 소음

(1) 위법성 판단

소음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¹⁰⁾ 교통소음으로 인한 수인한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피해자에게 있으며 거주지에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도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도로교통소음의 한도는 2010년 6월 30일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2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은 주간(06:00-22:00) 68dB(A), 야간(22:00-06:00) 58dB(A) 이고 상업지역은 주간(06:00-22:00) 73dB(A), 야간(22:00-06:00) 63dB(A)이다. 그리고 철도교통소음의 한도는 일반주거지역은 주간(06:00-22:00) 70dB(A), 야간(22:00-06:00) 60dB(A)이고 상업지역은 주간(06:00-22:00) 75dB(A), 야간(22:00-06:00) 65dB(A)이다.

(2) 배상책임 결정사유

(가) 소음측정시점과 객관적 소음도

신청인 아파트입주자들은 피신청인 회사가 2002년 6월 분양한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부터 유발되는 소음이 소음도 65dB 이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아파트입주자들은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방음대책과 그로 인한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환조 03-3-300 재결**로 피신청인 회사 등은 신청인 아파트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과 방음대책을 강구하라고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697 판결;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등 참조.

10)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 판결 등 참조.

재정결정하였다. 이에 피신청인 회사 등은 이 재정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채무부존 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¹¹⁾ 수원지방법원은 **2004가합7135 판결**로 소음도 측정시 건설부 고시가 정한 소음측정기준에 따르지 않았다고 보았다. 피신청인 회사가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은 2002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2002년 도로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측정된 소음도는 모두 65dB(A) 이하였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4년 3월의 소음도 수치를 이용하였다고 판시하였다.¹²⁾

한편 신청인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입주자들이 토지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대책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하였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환조 09-3-3 재결**로 피신청인인 토지공사는 신청인 아파트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과 방음대책을 강구하라고 재정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재정결정에 불복하고 수원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09가합18154 판결**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측정을 낮시간대 및 밤시간대에 각 1회씩만 측정하여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측정시간이 낮시간대(06:00~22:00)는 18:22부터 18:45 사이에, 밤시간대(22:00~06:00)는 22:00부터 22:23사이로 퇴근시간 무렵이나 밤 시간대가 시작되는 때로서 각 시간대별로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인 소음도를 나타내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토지공사의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하였다.¹³⁾

위 사안에 의하면 소음도 측정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측정시기와 방법 그리고 횟수를 재고해야 하며, 특히 측정시기는 교통량이 많아 소음이 심한 퇴근시간대와 같은 일부 특정시간대에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나) 분양과 도로설치 및 관리 구분

중앙환경분쟁위원회 02-3-429 재결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1997. 4.경부터 2002. 5.경까지 원고들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에 14차례에 걸쳐 방음벽의 설치를

11)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7135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나5955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12) 수원지방법원 2006. 9. 19. 선고 2004가합7135 판결.

13) 수원지방법원 2010. 5. 4. 선고 2009가합18154 판결.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오다가, 제1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8개동 311세대의 934명이 나서 2002. 12. 16. 건설회사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을 이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3. 9. 5. 이 사건 도로 등의 진동도와 미세먼지의 발생정도는 수인한도 이내인 것으로,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하여는 야간등가소음도가 65dB(A)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 이내인 것으로, 야간등가소음도가 65dB(A) 이상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각 판단한 끝에, 야간등가소음도가 65dB(A) 미만인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하고 야간등가소음도가 65dB(A) 이상인 세대에 거주하는 제1 피고들 등에 대해서는 '원고들은 제1 피고들 등에게 197,721,3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보가 제1 피고들 등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터널방음벽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하여 제1 피고들 등의 주택의 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하되, 피해배상액 및 방음대책비용은 원고 ○○○건설(구 ○○건설 주식회사)이 70%, 원고 부산광역시가 30%를 각각 부담한다'는 내용의 재정을 하였다.

이에 건설회사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은 아파트의 입주민을 상대로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채무가 있는지 법원에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8다9358 판결에 의해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회사는 도로의 설치·관리자가 아니고 그 주택의 건축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주택의 거주자들이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음 때문에 발생한 생활이익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분양회사는 주택의 공급 당시에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그 주택이 거래상 통상 소음방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민법 제580조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거나,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에서 소음방지시설이나 조치에 관

하여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거나,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소음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그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판시하였다.¹⁴⁾

위 사안에서는 주택 분양회사는 도로의 설치·관리자가 아니고 그 소음이 주택 건축으로 인한 소음이 아니므로 주택 거주자의 분양회사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지 분양회사는 거래상 목적물의 품질에 하자가 있다거나 소음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책임이나 신의칙상의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순환도로변 아파트 소음 사건에서는 당시 아파트 소음은 주간 58-68dB(A), 야간 51-65dB(A)로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고 있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들은 토지공사와 분양회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방음대책을 청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환조 07-3-117 재결**로 토지공사와 건설회사는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과 적당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라고 재정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 토지공사와 분양회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08가합4126, 4485 판결**로 피신청인 회사는 2003년에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일 뿐 도로의 설치, 관리자가 아니므로 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아파트 공급 당시에 위 아파트에 거래상 통상 소음 방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 이후인 2007년 11월 아파트에서 측정된 소음이 주간 58-68dB(A), 야간 51-65dB(A)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분양회사가 아파트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민법 제580조의 담보책임을 부담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¹⁵⁾ 또한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은 **2008나7337 판결**로 도로의 설치는 원활한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그 도로의 설치가 위법하다는 등의 다른 특

14)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판결.

15) 광주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가합4126, 4485 판결.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설치 자체를 두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수시로 변동되는 것을 감안하면 도로의 적절한 관리에 의하여 비로소 통제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소음에 관하여는 도로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하며 “도로의 설치자”와 “도로의 소유자·관리자”를 구분하였다.¹⁶⁾

이 두 사안에 의하면 법원은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는 목적물 분양을 했을 뿐으로 도로의 설치·관리자가 아니므로 그 주택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도로소음과 관련해서 그 소음은 도로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중앙환조 07-3-119 재결**에 따르면 익산시의 임대아파트 입주자 482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상대로 조정위원회에 열차운행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방음대책수립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절차에서 소음측정이 이루어진 바 04:40~05:40 시간대의 등가소음도가 층수에 따라서 57.2dB(A)에서 66dB(A)까지 측정되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게 야간소음도 65dB(A) 이상인 신청인 입주자 105명에게 측정비용 70만원과 신청액의 70%인 총 1500여만 원의 배상과 방음대책을 강구하라고 재정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은 법원에 신청인 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하여 철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방음대책 수립채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청구하였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8가합1301 판결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 부근의 철도선로는 1914년경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철도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반면 피

16) 광주고법 2009. 7. 3. 선고 2008나7337 판결.

고들은 1994년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1994년 당시의 야간소음도가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소음이 조금 증가(1dB(A) 정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볼 수 있다면 피고들의 생활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가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¹⁷⁾ 당시 고속열차 KTX등의 열차 운행시 소음도가 1994년에 비하여 2008년에 높아졌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또한 고속열차의 경우 구동방식의 차이로 기존의 디젤기관열차에 비하여 운행소음이 적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소음기준을 다소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생활이익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법원은 원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익산시의 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 철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야간소음도 65dB(A) 미만이 되도록 하는 방음대책 수립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하였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신청인 아파트입주자들이 인근 아파트부지 북쪽 철로의 KTX 등의 통행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난청 등 일상생활에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영등구청 등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과 방음대책을 청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환 조 08-3-202 재결**로 피신청인 영등구청 등은 신청인들에게 101,419,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적정한 규모의 방음벽을 보완·설치하여야 하고, 추가 방음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재정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재결에 피신청인 영등구청 등이 불복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9가합7459 판결**로 현재 아파트의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하여 소급하여 피신청인 영등구청이 아파트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사용승인을 한 것이 위법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은 2000. 3. 16., 사용승인은 2002. 7. 18. 이루어진 것인 반면에 철도소음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KTX의 운행은 2004. 4. 1. 이후에야 이루어졌고, 신청인들이 2008. 9.경에 이르

17)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9. 4. 24. 선고 2008가합1301 판결.

러시아 재정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서울 영등포구청이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용승인을 할 당시 향후 철도소음의 현저한 증가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밖에 피신청인 영등포구청에게 현재의 소음에 대한 책임을 지울만한 다른 근거도 없다고 판시하였다.¹⁸⁾

철도소음에 대한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8가합1301 판결의 경우 소음이 1dB(A) 정도 증가하였지만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보아 기준치의 다소의 증가는 면책시키고 있으나, 어느 정도까지 소음증가를 면책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제되며, 철도설치 당시에 비하여 기술의 발전으로 열차차종의 구동방식이 개선되어 소음이 저감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열차주행횟수가 증가함으로 인한 누적된 소음피해의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9가합7459 판결의 경우 아파트의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철도사업계획승인이나 사용승인을 할 당시 향후 철도소음으로 인한 현저한 증가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판단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많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라) 위험에의 접근

용인시 현대홈타운아파트는 인근에 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18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으며 아파트부지와 접하여 왕복 4차선의 23번 지방도가 통과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주민들이 수면방해와 여름철 창문을 개방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환조 03-3-164, 165 재결**에 의하면 피신청인인 한국도로공사 등은 신청인인 용인시 아파트주민들에게 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소음도를 주간 65dB(A), 야간 55dB(A) 미만이 되도록 방음대책을 시행하라고 결정하였다.

피신청인 한국도로공사 등은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25. 선고 2009가합7459, 2010가합8240 판결.

제기하였다.¹⁹⁾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2004가합7470** 판결로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소음 규제 기준치는 실제법상 일반 국민의 사법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규정이 아닌 환경 행정의 정책과 규제 등을 위한 공법상 기준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도로는 1969년 4차선으로 개통되었다가 1992년 현재와 같은 8차선의 도로로 확장되었고, 신청인들은 2001년에 아파트에 입주함으로써 실제로 입은 피해의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한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중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하며 피신청인의 면책을 인정하였다.²⁰⁾

이 사안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 도로소음을 인식하고 접근한 책임도 있겠지만 실제로 입은 피해의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위험의 정도를 어느 정도 초과한 것인지 법원은 구체적으로 그 인식의 정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처럼 아파트 인근에 경부고속도로와 지방도가 있으므로 인하여 도로소음이 중복되는 경우로 그 소음으로 인한 수인한도 판단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 일부 세대만 수인한도 초과

서울고등법원 2007나5955 판결에 의하면 소음 측정 결과 총 560세대 중 49세대의 소음도가 65dB(A) 이상인 사실만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²¹⁾ 일부 세대가 소음기준 이상인 사실만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 사안의 경우 다수 세대가 수인한도 내의 소음이라는 이유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세대의 소음이 존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수인한도를 초과한 소음이 있는 49세대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19)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7470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 수원지방법원 2005. 12. 6. 선고 2004가합7470 판결.

21)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7나5955 판결.

2. 공사장 소음

(1) 위법성 판단

공사장소음 사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판단을 한 대법원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소음 등의 배출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고²²⁾,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 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²³⁾하고 있다. 2010년 6월 30일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수음자의 위치에서 아침, 저녁(05:00 ~ 07:00, 18:00 ~ 22:00)에는 60dB(A) 이하, 주간(07:00 ~ 18:00)에는 65dB(A) 이하, 야간(22:00 ~ 05:00)에는 50dB(A) 이하(2008. 12. 31.까지는 각 65dB, 70dB, 55dB)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넘는 경우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사소음으로 인한 수인한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한 수인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소음도에 대한 측정이 전제된다. 그 입증이 없는 경우 수인한도의 설정 자체가 곤란할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각 거주지에 상당한 크기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도달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사시에 높은 소음을 유발하는 공정은 전체 공사기간 중 초반에 집중되어 있어서 피해주민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무렵에는 당해 공정이 끝난 이후이므로 실제 소음도에 대한 측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밀한 감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상당²⁴⁾하여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더욱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등을 거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22)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 판결 등 참조.

23) 도로소음에 관한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등 참조.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8104 사건의 원고는 약 970명이었는데, 감정비로 20,000,000원이 청구되었다. 한편, 위 사건은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2) 배상책임 결정사유

(가) 소음기준 초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8758 판결에 의하면 약 13개월 동안 터파기 공사를 위해 천공기, 브레이커 등이 사용된 사안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사결과 59dB(A) 내지 84dB(A), 법원 감정 결과 51dB(A) 내지 91dB(A)의 소음이 도달하였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실제로 74dB(A)이 측정된 바 있는 점, 터파기공사의 발생 소음은 연속적, 반복적인 충격소음이므로 더 큰 불쾌감을 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를 인정하였다.²⁵⁾

서울고등법원 2006나94125 판결에 의하면 6개월 동안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채 브레이커로 파쇄작업을 한 사안에서 담당 공무원이 소음측정을 한 결과 73dB(A) 측정되어 방음시설 설치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이후에도 소음 피해가 계속된 점 등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초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²⁶⁾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 103906 판결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 측정 결과 78dB(A) 측정되어 방음벽 재설치 처분을 한 점, 그 후에도 74dB(A) 내지 79dB(A)이 측정되어 방음벽 보완설치 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인정하였다.²⁷⁾

공사장 소음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의하여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 의하여 소음도 초과여부를 판단하고 행정청의 보완설치여부 등 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나) 태양과 정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공사장 소음피해의 태양과 성질 그리고 법정 소음도 초과정도는 다음과 같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4에서는 건설기계 중 브레이커, 천공기, 항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4. 선고 2009가합58758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9나115603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6) 서울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나94125 판결.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5. 선고 2007가합103906 판결.

타기 등을 '소음발생건설기계'로 분류하고 있고, 위 법 제44조, 위 규칙 제59조, 별표 19에서는 소음발생건설기계의 경우 해당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를 붙일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위 법 제22조, 위 규칙 제21조, 별표 9에서는 이러한 건설기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사전신고 대상으로 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2566 판결에서는 공사장에 투입된 기계들이 90dB(A) 이상의 높은 소음(항타기 93.1dB(A), 천공기 95.5dB(A), 브레이커 95.7dB(A))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하면서²⁸⁾, 이 사건에서는 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바위가 많아 터파기공사 과정에서 발파를 위한 천공작업이 6개월 동안 1일 평균 8시간²⁹⁾ 정도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천공기, 브레이커 등이 사용된 점, ②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천공기, 브레이커는 95.5dB(A) 이상의 충격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③ 각 세대는 위 공사현장으로부터 최대 150m 이내의 거리에 있어 거리감쇠공식에 따를 때 적어도 68dB(A) 이상의 소음이 빈번하게 도달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④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약 68dB(A)의 소음이 측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위 기간 동안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³⁰⁾.

이 판결에서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의 횟수, 1회 작업시의 지속시간, 1일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당시 하루 평균 천공 수는 328개로 1회 작업시 지속시간 1 내지 5분, 작업간의 인터벌은 1 내지 2분으로 피해자의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시하였다. 즉 수인한도 초과여부 판단시에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의 횟수, 지속시간, 소음원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따른 소음감쇠 등을 참작하고 있다.

(다) 토지이용 사정

공사장 소음의 위법성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피해자의 토지이용 사정도 중요한 요소이다.

28) 국립환경연구원, 「건설기계류 소음 특성」, 2003 참조.

29) 하루 평균 천공 수는 328개로 1회 작업시 지속시간 1 내지 5분, 작업간의 인터벌은 1 내지 2분이었다.

30) 같은 취지의 판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7가합63688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4. 1. 선고 2009나101420호 항소기각 판결 후 확정); 2010. 1. 20. 선고 2008가합128261 판결; 2010. 2. 5. 선고 2009가합60553 판결 등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2566 판결에서는 약 65dB(A) 정도의 소음도가 예측 될 수 있는 거리 이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는 소음진동규제법 소정의 규제 기준을 참조한 것으로, 이 사안에서 건설기계로 인한 소음의 거리 감쇠 특성을 고려할 때, 약 240m 떨어진 곳의 거리감쇠는 약 30dB(A)로 보고 횡타기, 천 공기, 브레이크를 사용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으로부터의 거리가 240m 이내 인 곳이면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거리감쇠 요인 이외의 요인 중 기상 조건, 소음원과 수음점 사이의 장애물이 있으면 위 추단이 불가능하므로, 위 요인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도달이 예측된다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안에서처럼 소음원과 수음점간의 이격거리에 따라서 소음이 감쇠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소음이 더욱 감쇠될 수 있으므로 수인한도 판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한다.

(라) 소음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사소음을 일으킨 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공사장 소음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방음 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는지, 그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문제된다. 공사소음을 일으킨 자는 다음 사정을 입증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킴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 가설방음벽 등이 소음원, 수음점과의 상대적인 수평 및 수직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충분한 '삽입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치, 즉 소음원과 수음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삽입손실'은 방음벽 설치 전후의 소음도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절감쇠치와 투과손실치로 이루어져 있다. 회절감쇠치는 방음벽이 설치됨으로써 방음벽이 없는 경우에 비해 경로차 만큼 추가적인 거리감쇠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방음벽이 높을수록, 음원과 방음벽 사이의 거리 및 방음벽과 수음점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그 수치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투과손실치는 방음벽 자체의 차음능성에 의하여 감쇠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사소음을 일으킨 자는 면책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회절감쇠치와 투과손실치로 인하여 소음이 소음원과 수음점 사이를 적절하게 차단되고 있다거나 피해자가 수인할 정도로 저감시켰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06나94125 판결에 의하면 6개월 동안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채 브레이크로 파쇄작업을 한 사안에서 담당 공무원이 소음측정을 한 결과 73dB(A) 측

정되어 방음시설 설치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이후에도 소음 피해가 계속된 점 등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초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³¹⁾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 103906판결에 의하면 5개월 동안 콘크리트 파쇄, 천공작업 등이 진행된 사안에서 소음측정 결과 78dB(A)이 측정되어 방음벽 재설치 처분을 한 점, 그 후에도 74dB(A) 내지 79dB(A)이 측정되어 방음벽 보완설치 처분을 하였음을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를 인정하였다.³²⁾

이 사안에 의하면 공사소음을 일으킨 자는 면책을 위하여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즉 피해자가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주장하면 공사소음을 일으킨 자는 소음원과 수음점 사이에 장애물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소음이 회절감쇠 되고 장애물로 인해 투과감쇠 되어 소음도가 수인한도 내임을 항변하여야 한다.

3. 일조권 침해

(1) 위법성 판단기준

환경침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며 그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비로소 위법하다.³³⁾ 따라서 일조권이 침해되거나 침해우려가 있는 때 어느 정도 수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범위가 있어 그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 비로소 위법하게 된다.³⁴⁾ 이러한 수인한도는 가해자의 건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일조 등 생활이익의 침해와 가해자의 권리행사의 사회적 타당성을 비교형량하여 어느 정도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수인한도의 초과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

31) 서울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나94125 판결.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5. 선고 2007가합103906 판결.

33) 박창현, “일조권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관례연구」 제7집, 부산관례연구회, 1997, 605면.

34) 加藤一郎編, 「公害法の生成と展開」, 27頁; 野村好弘, 「故意·過失および違法性」加藤編, 387頁; 淡路剛久, “公害賠償の理論”, 111頁; 藪重夫, “日照の私法的保護に関する諸問題”, 「北大論集」第25卷 第3号 1頁 以下; 澤井裕, “公害の私法的研究”, 405頁 以下; 奥田昌道 外編, 「民法學(6)」, 81頁 以下.

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³⁵⁾ 한편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나 피해건물의 구조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배상책임 결정사유

(가) 일조피해의 정도

피해건물이 그 구조로 인하여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 수인한도는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전체 일조방해에서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일조방해와 신축건물에 의해 발생하는 일조방해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³⁶⁾

대법원 98다56997 판결에 의하면 원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지상 3층 연립주택의 남측에 인접한 지상에 피고 아파트조합이 건축한 23층 내지 26층 규모의 아파트 4개동의 완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각 연립주택에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어 일조침해가 있었고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다. 이 사안에서 피고 아파트조합은 위 아파트의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건축 관련 법규에서는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 확보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준이 없으므로 공법상 규제 위

35)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92;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697 판결;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등 참조.

36)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반 여부는 일조권 침해의 정도를 참작할 요소일 뿐 이를 들어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³⁷⁾

한편 일조방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5333 판결**에 의하면 한강 조망을 위하여 북서향으로 지어진 오피스텔(남쪽에 1m² 정도의 채광창)의 거주자들이 남동쪽의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당해 건물의 구조, 거실 및 각 방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의 주요 개구부는 북서쪽에 있음을 이유로 신축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를 부정하였다.³⁸⁾ 또한 **서울고등법원 2007나60396 판결**에 의하면 피해건물이 서향으로 가해건물 신축 전에도 충분한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못하였던 사안에서 일조가 확보되지 않은 일조방해시간 증가량의 가해건물 신축 전 일조방해시간에 대한 비율이 1/3에, 가해건물 신축 후 일조방해시간에 대한 비율이 1/4에 각 미달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조방해를 부정하였다.³⁹⁾

이 사안에서 법원은 규제법규 위반 여부는 일조권 침해의 여부를 참작할 요소로 보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개구부의 위치에 따라 건물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일정비율 일조가 감소되었다고 할지라도 일조방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일조시간과 일조방해시간의 감소비율 판단에 규정상의 기준치에 일정정도 재량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나) 지역성

일조침해지역이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가 수인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37)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8. 1. 22. 선고 96가합78196 판결 참조.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합95333 판결. 이 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 76459)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이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4. 선고 2008가합 63821 판결에서는 남동쪽에도 발코니 및 전면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채광을 위한 주요개구부'는 남동쪽이라고 보아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나32388 판결)를 기각하였다.

39) 서울고등법원 2008. 3. 13. 선고 2007나60396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 2004다54282 판결의 환송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즉, 가해건물 신축 전의 일조방해시간이 348.3분이고, 신축 후의 일조방해시간이 408.3분인 세대의 경우 '일조방해시간의 증가량'은 60분이 되고 '신축 전의 일조방해시간에 대한 비율'은 약 0.17%, '신축 후의 일조방해시간에 대한 비율'은 약 0.14%로서 각 1/3, 1/4에 미달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지역성은 용도지역제와 지역의 실태로 나눌 수 있다.⁴⁰⁾ 건축법규는 용도에 따라 각 경우의 용적율과 고도제한⁴¹⁾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생활보호를 위한 일조권 침해의 판단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⁴²⁾ 이러한 지역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수인한도도 변할 수 있다.⁴³⁾

대전지방법원 2005나5780 판결에 의하면 피고의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하여, 동지 일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중 원고의 주택 전면 개구부의 면적을 기준으로 직사광선만을 고려하여 평가한 일조시간은 '6시간 44분'에서 '1시간 33분'으로 감소되었고, 09:00부터 15:00까지 6시간 중 50% 이상의 일조를 기준으로 평가한 최장 연속일조시간은 '4시간 30분'에서 '0'으로 감소되었으며, 원고의 주택과 피고의 오피스텔이 위치한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역으로 원칙적으로는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니고 고층건물의 신축이 항상 예상되는 지역이다. 피고의 오피스텔 신축 당시 건축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과는 달리 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의 오피스텔은 그 신축 당시의 건축 관계 법령이 정하는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 등 간접적으로 다른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기준에 위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위와 같은 정도의 일조방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 내라고 판단하였다.⁴⁴⁾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2005다72058 판결**로 구체적인 수인한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조피해를 받은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와의 관련성 등도 고려하여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며⁴⁵⁾, 오피스텔 신축 당시 건축관계 법령에 상업지역 건축

40) 五十嵐敬喜, "日照權の理論と裁判", (東京: 三省堂, 1980), 27頁-28頁.

41) 배병일, "일조권침해에 대한 사법적구제", 「사회과학」제4집 제2권 (영남대학교, 1984), 388면.

42) 오세훈, "일조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환경문제연구총서(IV)」, 대한변호사협회, 1996, 89면.

43) 이동원, "일조권침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법학」제27호, 한국민사법학회, 2005, 264면.

44) 대전지방법원 2005. 11. 4. 선고 2005나5780 판결.

45)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등 참조.

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의 제한규정이 없으며 건축관계 법령상의 각종 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⁴⁶⁾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3392 판결에 의하면 4층 내지 6층 규모의 연립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지상 3층(높이 11.42m)의 피해건물과 지상 2층(높이 8.46m)의 기존건물이 있었는데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6층(높이 18.2m 내지 23.78m)의 가해건물을 신축한 사안⁴⁷⁾과 같은 법원 2007가합110782 판결에 의하면 피해건물이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로서 피해건물 대지 및 가해건물 대지가 1969년 이래 모두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가해건물 및 주변 건물들도 피해건물과 비슷한 규모의 상업용 건물이었던 사안⁴⁸⁾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최근 대구고등법원 2009나5958 판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대지는 원래 주거지역이었는데,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가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최저고도지구(9.9m 이상)로도 지정되었고, 간선도로변에 상업용·업무용 건물, 학교, 병원 등 편의시설과 간선도로 후변 주택 등 주거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중심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역으로서 고층건물의 신축이 항상 예상되는 지역인 점이 참작되어 일조피해의 정도를 수인한도 내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⁴⁹⁾

위의 판례 중 하급심 판례의 경우 상업지역은 원칙적으로는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고층건물의 신축이 항상 예상되는 지역으로 각 사안에서 그 일조피해의 정도를 수인한도 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물신축 당시 건축 관련 법령에 상업지역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의 제한규정이 없고 건축 관

46)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5. 선고 2007가합83392 판결. 이 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102303)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5. 선고 2007가합110782 판결.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119950 판결),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확정되었다.

49) 대구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5958 판결.

런 법령상의 각종 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일조시간의 대폭 감소되거나 일조연속시간이 거의 제로인 상태로 일조방해가 되었을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 내라고 판단할 수 없다. 비록 건물신축 당시 건축 관련 법령에 상업지역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의 제한규정이 없고 건축 관련 법령상의 각종 기준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다) 건물의 용도

피해건물의 공공성이 클수록 그로 인한 일조방해에 대하여 수인할 범위는 넓어지고 위법성의 범위는 좁아진다. 여기서 공공성이란 사회적 유용성 또는 사회적 편익을 의미한다. 피해건물이 창고, 공장, 사무소 등이라면 일반주택에 비하여 일조정도가 낮고 같은 주택이라도 주간은 거의 비워두는 기숙사 등은 일반주택에 비하여 일조정도가 낮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다41499 판결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건물에 관하여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들은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⁵⁰⁾

대구고등법원 2009나5958 판결에 의하면 학교건물에 대하여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이 사안에서 학교건물은 동지일 이후에는 겨울방학을 하고 건물 중 중학교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및 학교 3학년생이 사용하는 관련 건물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 학기 중에도 보충학습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정규수업시간 이후에는 건물을 사용하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어 있으며, 교실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상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과학실험실 또는 주방 등 일부건물은 일조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으며,

50)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한지형, "법원 환경전담재판부 처리사건의 최근 동향과 판결내용분석 - 일조·소음 사건을 중심으로 -" 환경부, 2011.

운동장은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물의 경우보다 일조 방해의 수인한도를 완화할 여지가 있고 동지일 무렵에는 겨울철이므로 그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하여 일조방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⁵¹⁾ 반면에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일반주택은 일정시간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학교, 창고, 공장, 오피스텔의 사무실 보다 많은 일조량이 필요하다. 수인한도 판단시 건물의 용도가 중요하다.

(라) 피해건물의 상태

피해건물이 건축법상 규정된 이격거리를 위반하여 남쪽 대지경계선에 가깝게 건축됨으로써 일조방해의 정도가 심화되었다면 수인한도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피해건물이 건축법상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준수하여 건축된 상태를 가정하여 그 상태 하에서 가해건물의 건축에 의한 일조방해의 정도를 측정하여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현 상태에서의 일조방해의 정도와 다른 요소를 참작하여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결정한 후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시 피해건물의 건축법 위반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⁵²⁾

대법원 2004다24212 판결에 의하면 원고 소유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0.7m, 최대 0.872m 정도의 이격거리를 두고 지상 5층, 높이 13.8m의 공동주택이 건축된 경우 일조침해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가 서울특별시의 질의 회신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였다거나, 피고의 건축허가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의 경우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규정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건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소유자에게 일조침해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한다면 규제법을 준수하고 위법하게 된다.

51) 대구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5958 판결.

52) 이동원, 전게논문, 266면.

(마) 피해 회피가능성

임차인은 건물임차를 포기함으로써 일조방해를 회피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현재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임차인은 일조방해 회피가능성이 건물의 소유자에 비하여 높다. 한편 매수인이 건물공사착공 전후 어느 시점에 목적물을 매수했느냐에 따라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적 가치 하락액에 대한 감액 비율이 달리 산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5다47014 판결에 의하면 복수의 아파트가 건축되는 경우 가해건물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아파트 착공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재산적 가치 하락액 중 30%를 감액한 액을 손해배상에 산정하였으나, 아파트 착공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아파트가 완공되어 일조침해가 있음을 알고서 그로 인한 피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재산적 가치 하락액 중 50%를 감액한 액을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산정하였다.⁵³⁾ 즉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적 가치하락액의 감액액수를 달리 산정하고 있다. 일조침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조침해를 알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렇지 않는 자에 비하여 재산적 가치하락액 중 더 많은 정도를 감액한 액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바) 건물의 선후관계

피해자가 이웃 토지에 건물이 신축될 것을 알면서 피해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수인한도 판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불리하다.⁵⁴⁾ 가해건물이 건축법령상의 일조관련 규정에 현저히 위반하였거나 일조방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뒤에 건축된 건물이 그로 인하여 일조방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인한도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⁵⁵⁾

대법원 2008다23729 판결에 의하면 기존 2층 주택의 소유자가 낙후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4층의 다세대주택인 가해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미 기존 2층 주

53)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8. 1. 22. 선고 96가합78196 판결 참조.

54) 강창욱, “일조방해와 손해배상”, 『판례연구』 제12집, 부산판례연구회, 2001. 6., 831면.

55) 이동원, 전게논문, 268면.

택과 인접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조방해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당초 기존 2층 주택으로 인하여 생긴 일조방해에 대하여는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수인할 의무가 있었던 이상, 신축 가해건물로 생긴 일조방해 중 기존 2층 주택으로 인하여 당초 발생하였던 일조방해의 범위 내에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⁵⁶⁾ 한편 하급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9119 판결**에 따른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이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되면서 같은 날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졌고, 가해건물이 착공된 지 20일 뒤에 피해건물이 착공되었으며, 피해건물의 골조 완공 6개월 뒤에 가해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그 후 7개월 뒤에 원고들이 피해건물에 입주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었고, 같은 법원 **2007가합9462 판결**에 따른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이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되면서 이주대책 등의 문제로 피해건물이 먼저 착공되었으나 그 후 가해건물도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되었고 피해건물 골조 완공 2년 뒤에 가해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원고들이 피해건물에 거주한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도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었다.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이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졌으나 착공시기를 2년 정도 차이를 두고 건물을 완공하는 등 그 완공시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일조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이 지상층수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 층수에 대한 일조침해에 대해서는 수인할 의무가 있다.

(사)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일조침해가 건축법 등에 위반된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으로 신축건물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⁵⁷⁾. **대법원 2004다24212 판결**에 의하면 건축허가에 따라 공동주택이

56)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건축되었다고 하여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어서 공동주택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 당사자간의 합의

가해건물의 건축주와 피해건물의 소유자 사이에 가해건물을 일정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지 않기로 하거나 일정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려면 피해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로 사전에 합의가 있었던 경우 가해건물의 건축주가 이러한 합의에 위반하여 피해건물 소유자의 동의없이 약정한 층수 이상 건축하려 한다면 수인한도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⁵⁸⁾ 이러한 경우 피해건물의 소유자는 가해 건축건물에 대하여 공사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V. 재정결정방향

1. 교통소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소송한 사건 중 법원에 의해 불인용된 판결은 주로 무변론 판결, 소송수행상의 자백간주, 공시송달 등으로 패소된 경우가 있다. 재정결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소송을 지양하고 동일 사건에 대한 법원에서의 인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결정 전후 관련 당사자들과의 정보공유와 상담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분쟁소음측정시점을 소음분쟁당시가 아닌 아파트분양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소음측정시를 교통이 복잡한 퇴근시를 기준으로 단 1회만 측정하고 판단해서 안 되며 객관적인 소음도 측정횟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음이 조금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볼 수 있다면 생활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57)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4212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등 참조.

58) 이동원, 전게논문, 269면.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도로설치가 위법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설치 자체를 두고 도로관리를 잘못하여 환경오염 원인을 야기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입주자들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소음을 인식하였다거나 손해발생과 확대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가해자의 경우 침해의 정도에 따라 면책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철도소음의 일정정도 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보아 면책 시키고 있으나⁵⁹⁾, 어느 정도의 소음증가를 면책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제되며, 열차의 구동방식의 개선으로 소음이 저감되었다고 하나 열차주행횟수가 증가함으로 인한 누적된 소음피해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의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철도사업계획승인이나 사용승인을 할 당시 향후 철도소음으로 인한 현저한 증가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⁶⁰⁾ 그 예견가능성의 판단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한편 아파트 입주자들이 인근 도로소음을 인식하고 접근한 책임⁶¹⁾도 있겠지만 그 피해의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며, 어느 정도 초과한 것인지 법원의 판단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다수 세대가 수인한도 내의 소음이라는 이유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세대의 소음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⁶²⁾ 그 수인한도 초과 정도에 따라 피해를 인정해야 될 것이다.

2. 공사장소음

법원의 경우 공사장소음기준 판단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기준에 따르고 있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약간의 차이가 있고, 공사현장에서의 건설기계 작업회수, 1회 작업시간, 지속시간, 작업간격 등을 수인한도 판단시 참작하고 있다. 또한 행정처분에 따른 가해자의 방음벽 설치여부와 과태료 이행여부 등이 참작되고 있다. 한편 최근 판결의 경우 소음원으로부터의 거리감쇠여부와 기상조건, 장애물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로써 활용되고 있다.

59)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9. 4. 24. 선고 2008가합1301 판결.

6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25. 선고 2009가합7459, 2010가합8240 판결.

61) 수원지방법원 2005. 12. 6. 선고 2004가합7470 판결.

62)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7나5955 판결.

3. 일조권침해

법원은 일조방해와 관련하여 가해건물의 공공성이 클수록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정도를 넓게 인정하면서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 창고, 공장 등의 이용자는 일조이익 향유를 주장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일조권을 침해한 자가 건축관련 법규 등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비록 일조권 침해자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축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조침해를 예견하였다면 그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일조권 침해를 인지하고 매수하였다거나 건물을 신축한 경우 피해자에게 불리하다. 한편 건물신축 당시 건축 관련 법령에 상업지역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의 제한규정이 없고 건축 관련 법령상의 각종 기준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 건설시 건축허가를 받고 규정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건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조침해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한다면 규제법을 준수하고 위법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논문투고일 : 2012. 3. 30. 심사일 : 2012. 4. 14. 게재확정일 : 2012. 4. 21.

참고문헌

- 강창욱, “일조방해와 손해배상”, 「판례연구」 제12집, 부산판례연구회, 2001. 6
- 국립환경연구원, 「건설기계류 소음 특성」, 2003
- 박창현, “일조권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판례연구」 제7집, 부산판례연구회, 1997
- 배병일, “일조권침해에 대한 사법적구제”, 「사회과학」 제4집 제2권, 영남대학교, 1984
- 신태섭, 「분쟁조정사건 소송결과분석(2010년 상반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0. 8.
- 양근철, 「환경분쟁조정현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1. 3.
- 오세훈, “일조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환경문제연구총서(IV)」, 대한변호사협회, 1996
- 이동원, “일조권침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법학」 제27호, 한국민사법학회, 2005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1년도 환경분쟁조정-제도개선 및 우수사례발표 자료」, 2011. 11. 23.
- 한지형, “법원 환경전담재판부 처리사건의 최근 동향과 판결내용분석 -일조·소음 사건을 중심으로-” 환경부, 2011
- 五十嵐敬喜, 「日照權の理論と裁判」, 三省堂 1980
- 加藤一郎編, 「公害法の生成と展開」, 岩波書店, 1968. 8
- 野村好弘, 「加藤一郎編 公害法の生成と展開」. “故意·過失および違法性”, 岩波書店, 1968. 8
- 淡路剛久, 「公害賠償の理論」, 有斐閣, 1978
- 澤井裕, 「公害の私法的研究」, 一粒社, 1969
- 奥田昌道 外編, 「民法學(6)」, 有斐閣, 1975

[Zusammenfassung]

Entscheidungsgründe des Gerichts für die Schadensersatzhaftung und die Entscheidungsrichtung des Schiedsspruchs

Lee, Sengwoo

Die Lärmimmissionswerte orientieren sich am Charakter des von der Immission betroffenen Wohngebietes. Diese Abstufung rechtfertigt sich daraus, daß die subjektiv empfundene Lärmbelastung von der Einstellung zur jeweils vorhandenen Lärmquelle abhängig ist. Sie stellen allgemeine Erfahrungssätze dar und sind wegen ihrer Ausrichtung auf nachbarschaftlichen Ausgleich eher zu hoch als zu niedrig angesetzt. Der Gericht hat daher die Anerkennung der durch die Immissionswerte festgelegten Grenzen dahin eingeschränkt, daß auch Immissionen im Bereich unterhalb der Richtwerte wegen ihrer besonderen Lästigkeit im Einzelfall eine wesentliche Beeinträchtigung darstellen können. Bei Überschreiten der dort angegebenen Lärmimmissionswerte ist in jedem Fall eine wesentliche Beeinträchtigung anzunehmen. Das Gesetz hat trotz Festsetzung von Lärmschutzbereichen, Regelung der Erstattung von Aufwendungen für Lärmschutzmaßnahmen die nachbarrechtlichen Beziehungen nicht abschließend geregelt. Im Bereich unterhalb der Richtwerte sind die entwickelten Beurteilungsmaßstäbe anzuwenden.

In Wohngebieten trägt eine mögliche Besonnung zum Wohlbefinden der Bewohner bei. Dementsprechend ist im Zuge der Planung eine Betrachtung der Besonnungs- und Beschattungsverhältnisse vorteilhaft. Die flächenhafte Darstellung der möglichen Sonnenscheindauer an ausgewählten Tagen zeigt die Beeinflussung der Besonnung durch Gebäude. Die massive Blockrandbebauung führt zu einer intensiven Verschattung in der Höhe des Erdgeschosses. Das betrifft sowohl die Innenhöfe als auch die Straßenräume, so daß innerhalb des Gebietes des Bebauungsplanes an den Fassaden der geplanten Gebäude im Erdgeschoß das Besonnungskriterium von mindestens 4 Stunden pro Tag größtenteils nicht eingehalten wird. Im Winter weist der 21.12. den niedrigsten

Sonnenstand und im Sommer der 21.06. den höchsten Sonnenstand auf. Am östlichen Ende dieser Sonnenbahnen sind die Uhrzeiten des Sonnenaufgangs vermerkt. Schneidet nun eine dieser Sonnenbahnen die Horizontlinie, bedeutet das ab diesem Zeitpunkt eine Verschattung des Standortes des Beobachters bis zum Austritt der Sonnenbahn aus der Horizontlinie.

주 제 어 소음공해, 수인한도, 일조권침해, 배상책임, 재정결정방향

Key Words Lärmimmission, Duldungsgrenze, Besonnungsrechtsverletzung, Schadensersatzhaftung,
Entscheidungsrichtung des Schiedsspruchs